

정 관
(단체 규약)

양양군서핑협회

시 행: 2014. 02. 20
개 정: 2019. 02. 20
일부개정: 2026. 01.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 협회는 양양군서핑협회(이하 '본 협회' 또는 '본회') 라 칭하고 영문은 "The YangYang Surfing Federation of Sport for All"(약칭 YSA)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협회는 서핑종목을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활기찬 여가생활로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무소)

1. 본 협회의 사무실은 양양군에 둔다.
2. 지역을 나누어 클럽을 운영한다.(이하'클럽'이라 칭한다.)

제 4 조 (사업) :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핑을 통한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2. 서핑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사업 및 홍보활동
3. 각종 서핑대회 주최, 주관 및 국제대회유치 개최
4. 서핑협회 및 양양군 체육회 정관에 따른 제사업
5. 서핑발전을 위한 학생 및 청소년 지도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권리 의무

제 5 조 (조직) : 본 협회는 클럽 및 협력단체로 조직한다.

제 6 조 (권리) : 클럽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총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 클럽(협력단체포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협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 이사 3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포함, 사무국장), 감사 1인.
2. 위촉 임원 :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계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회장이 임명하여 추후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10 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③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④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 ⑤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3.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체육회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6.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본 협회 임원의 중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의 직무)

1. 본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와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 14 조 (구성)

1. 본 협회의 총회는 등록된 임원과 각 지역의 클럽장과 클럽장이 추천한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전항의 대의원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당해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제 15 조 (기능) :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무 및 회계 결산 승인
4. 정관 수정 및 제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
5. 1항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가 있거나 제적대의원 1/3이상 회의목적의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시 회장은 이를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의장의표결권) : 본협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서면결의) :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1/3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시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23 조 (발언권 및 표결권) :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한다.

제 24 조 (운영 규정) : 본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5 조 (회의록) :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구성 및 직무)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7 조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 상정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본 협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기타 중요사항

제 28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2. 이사회 의사에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한다.

제 29 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제 3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30 조 (긴급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클럽

제 31 조 (설치) 클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클럽은 각 서핑 지역에 두며, 명칭은 ○○(지역명기) 서핑클럽으로 칭한다.
2. 클럽은 협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체육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클럽은 클럽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동호인을 둔다.
4. 클럽은 산하협회를 둘 수 있다.
5. 클럽의 사무소는 당해 군에 둔다.

제32조 (클럽 총회)

1. 클럽의 총회 구성은 생활체육 동호인, 엘리트체육인 클럽단위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핑협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3 조 (설치)

1.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34 조 (사무국장의 직무) :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5 조 (직제 및 규정) :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규칙은 중앙회의 제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재정) : 본회가 제 5 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
4.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 37 조 (잉여금의 처리) :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8 조 (재산관리)

1. 본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본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 재산법 및 물품관리법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 본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협회 및 시·군 체육회 임직원
2. 본협회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기타 본협회 및 시·군 협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 40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2. 본 협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 증·감사 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회계연도)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42 조 (기금 및 적립금) :

1. 본 협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한다.

제 43 조 (회계감사) : 본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회원단체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44 조 (상벌)

1. 본 협회는 서핑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하고 비위단체 및 회원은 징계 할 수 있다.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5 조 (이적 및 해산)

1. 본 협회의 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대의원회를 거쳐 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46 조 (준용) : 본 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협회의 규정은 본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본 협회의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